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49호
2016. 5. 12.(목)

함께
서울



목 차

◆ 고 시

제2016-13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3
 제2016-136호 서울특별시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
 제2016-137호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 공 고

제2016-97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32
 제2016-97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32
 제2016-985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33
 제2016-992호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4
 제2016-9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38
 제2016-99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
 제2016-101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41
 제2016-1018호 제3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 41
 제2016-10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48
 제2016-1036호 제3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 49

◆ 구 고 시

제2016-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53
 제2016-58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대문구) 56
 제2016-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마포구) 58
 제2016-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송파구) 58

◆ 구 공 고

제2016-37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용산구) 60
 제2016-4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랑구) 61
 제2016-5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 공고(은평구) ... 67

◆ 사업소고시

제2016-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9

제2016-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0

◆ **사업소공고**

제2016-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71

◆ **기 타**

제2016-1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

제2016-1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

제2016-17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73

제2016-171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7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신규 조성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 110325호-행정과 (1995.3.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정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명칭 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근린공원1	강서구 마곡동 255-1일원	503,875	서울식물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곡조성과(☎02-2133-1562)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6호

서울특별시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 상류(녹천교-상계교 좌안둔치) 일대 파충류 서식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보호구역 지정현황

- 가.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녹천교-상계교 좌안 둔치)
- 나. 면 적 : 23,506㎡
- 다.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토지소유주
합 계				127,489.0	23,506.0	
1	상계동	853-3	하천	661.0	661.0	국토교통부
2	상계동	853-2	제방	5,167.0	337.0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상계동	854-4	구거	534.0	354.0	서울특별시 노원구
4	상계동	852-4	하천	292.0	63.0	국토교통부
5	상계동	852-8	하천	861.0	523.0	국토교통부
6	상계동	851-11	하천	168.0	28.0	국토교통부
7	상계동	817-3	하천	19,110.0	5,698.0	서울특별시 노원구
8	상계동	817-2	제방	2,035.0	213.0	서울특별시 노원구
9	상계동	813-2	하천	26,021.0	5,473.0	서울특별시
10	상계동	791-1	하천	24,575.0	2,863.0	서울특별시
11	상계동	791	하천	3,425.0	2,316.0	국토교통부
12	상계동	788-3	하천	20,249.0	4,677.0	서울특별시
13	상계동	770-1	하천	24,391.0	300.0	국토교통부

2. 지정사유

-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 산란처 및 서식처임
- 중랑천 둔지 주변에 자전거 도로 및 주민편의시설, 경작행위 등으로부터 표범장지뱀 서식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

3. 지형도면의 작성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및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보호구역에서의 출입제한지역 설정

가. 출입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 출입제한지역의 위치 :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녹천교-상계교 좌안 둔지)
- 출입제한지역의 면적 : 23,506㎡
- 출입제한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 출입제한기간 중에는 산란 및 번식지 출입을 금지하나, 출입제한지역내 탐방로(데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나. 출입제한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3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2조

다. 출입제한의 사유

- 파충류 번식기(7월~8월) 산란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필요

5.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및 오염
- 수면의 매립
-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나.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가는 행위.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행위,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 :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기타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없이 옮기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생물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야생동물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다. 보호구역안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규칙이 정하는 재해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구역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등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행위제한 및 금지 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5)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7) 가축의 방목		50	100	100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9)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50	100	100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50	100	100
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50	100	100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사항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나. 위임관리기관 : 노원구(공원녹지과)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9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노원구청장에게 위임·관리

8. 기 타

- 상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 및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ecoinfo.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열람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48) 및 노원구 공원녹지과(☎02-2116-3950)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7호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2-4 일대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광나루역세권(광장동 242-4 일대)을 광진구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고 광진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

I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동 242-4번지 일대	-	증) 34,223	34,223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사유
신 설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동 242-4번지 일대	신설 : 34,223	중심기능이 미약한 광나루역세권의 기능강화 및 역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4,223	-	34,223	100.0	-	
소 계	34,223	-	34,223	100.0	-	
주 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63	-	4,763	1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84	-	984	2.9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2	-	12,702	37.1	-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74	-	15,774	46.1	-

주) 용도지역의 변경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시 수립시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	광장지구	자연경관 지구	광장동 530일대	348,500 (5,063)	-	-	1977.12.03. (건고 235호)	-

주) ()는 구역내 면적임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8	중심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신당동 214-119~ 광장동 190-21	268,200 (4,175)	10,300 (342)	양측 12	1982.04.22. (서고 164호)	-
기 정	-	-	역사문화 미관지구	광진교 북측삼거리 ~광장동 서울시계	36,480 (175)	1,520 (18)	12	1991.05.27. (서고 191-147호)	-

주)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9	1,455	-	-	5	1,045	4	410
대 로	-	-	-	-	-	-	-	-
중 로	1	406	-	-	1	406	-	-
소 로	8	1,049	-	-	4	639	4	41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06 (241)	광장동 551-5	광장동 331-3	일반 도로	-	2007.08.02 (광고 2007-22)	광장로
변경	중로	2	1	12~20	집산도로	406 (241)	광장동 401-33	광장동 331-3	일반 도로	-	-	광장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47 (134)	광장동 244-4	광장동 256-5	일반 도로	-	2005.05.26 (서고 2005-163)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48	광장동 248-4	광장동 244-1	일반 도로	-	1977.07.11 (서고 216호)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248	광장동 244-24	광장동 248-2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80	광장동 246	광장동 257-3	일반 도로	-	1972.07.06 (서고 89호)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80	광장동 238	광장동 257-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6	광장동 247	광장동 244-1	일반 도로	-	1977.07.11 (서고 216호)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84	광장동 249-7	광장동 245-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64	광장동 245-1	광장동 247-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0	광장동 244-2	광장동 244-1	일반 도로	-	1977.07.11 (서고 216호)	-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70	광장동 244-34	광장동 245-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86	광장동 550	광장동 244-1	일반 도로	-	1977.07.11 (서고 216호)	구거부 지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86	광장동 550-11	광장동 248-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70	광장동 248-23	광장동 551-11	일반 도로	광장동 주민센터	-	-

주)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2-1 (광장로)	중로 2-1 (광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 확장 - 12~20m→20m 폭원 변경 - 15m→12~20m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장하여 조정 현황도로의 폭원에 따라 조서상 폭원 변경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점 지번 변경
소로 2-3	소로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 2-4	소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 3-1	소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 변경 연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점 지번 변경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조서상 오기된 연장 정정
	소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변경 - 6m→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3-1호선 일부구간 확폭
소로 3-2	소로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소로 3-3	소로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선형 조정 기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경계와 일치하도록 도로선형 조정 토지지번 변동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	소로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폭 6m - 연장 7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온달공원	소공원	광장동 242-1	-	증)1,012	1,012	-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유
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소공원 - 면적 :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공원시설로 사용중인 부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주민 휴게공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공원으로 결정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완충녹지	광장동 394-28	762	-	762	2002.10.07 (서고 2002-360)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공동개발 특별지정으로 지정된 일단의 필지단위를 대지로 하여 건축하여야 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GR-8,GR-9)	특별계획가능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2,3
제3종일반주거지역(GR-2)	공동개발특별지정	-

나. 공동개발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필지, 동일소유필지, 과소필지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지정이 필요한 경우	-
	권장 가구형태의 정형화, 규모있는 개발유도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권장이 필요한 경우	-
	특별지정 공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개발을 특별히 지정	-

다.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 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지목	면적(㎡)	비고
GR-1	1,716	광장동	394-3	대지	1,716	
GR-2	1,127	광장동	246-9	대지	240	•공동개발 특별지정
		광장동	246-10	대지	204	
		광장동	246-11	대지	444	
		광장동	246-20	대지	230	
		광장동	550-11	구	9	
GR-3	2,622	광장동	245-2	대지	196	
		광장동	245-16	대지	204	
		광장동	246-7	대지	202	
		광장동	247-2	대지	205	
		광장동	247-17	대지	206	
		광장동	247-18	대지	206	
		광장동	247-20	대지	204	
		광장동	247-22	대지	209	
		광장동	247-23	대지	208	
		광장동	247-24	대지	202	
		광장동	248-20	대지	178	
		광장동	248-25	대지	202	
		광장동	248-26	대지	200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지목	면적(㎡)	비 고
GR-4	2,591	광장동	248-22	대지	278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공동개발 지정 : 248-22, 551-4, 551-5 - 공동개발 권장 : 248-22, 395-3 •필지분할가능선 : 395-3(분할면적 : 14㎡)
		광장동	395-3	답	47	
		광장동	551-4	대지	38	
		광장동	551-5	도로	7	
		광장동	247-9	대지	2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가능선 : 395-3(분할면적 : 33㎡)
		광장동	248-28	대지	240	
		광장동	395-3	답	47	
		광장동	551-3	대지	42	
		광장동	247	대지	235	
		광장동	247-10	대지	213	
		광장동	247-11	대지	233	
		광장동	247-13	대지	217	
		광장동	248-3	대지	214	
		광장동	248-5	대지	203	
		광장동	248-7	대지	202	
		광장동	248-10	대지	198	
		광장동	248-33	대지	222	
GR-5	2,335	광장동	248-24	대지	624	•공동개발 지정
		광장동	258-44	대지	53	
		광장동	551-7	대지	33	
		광장동	551-9	대지	52	
		광장동	257-12	대지	264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공동개발 지정 : 258-45, 551-8, 551-10 - 공동개발 권장 : 258-45, 257-12
		광장동	258-45	대지	261	
		광장동	551-8	대지	5	•공동개발 권장
		광장동	551-10	대지	30	
		광장동	257-5	대지	109	
		광장동	257-10	대지	152	
		광장동	257-3	대지	175	
		광장동	257-8	대지	175	
		광장동	257-9	대지	175	
광장동	258-3	대지	227			
GR-6	2,568	광장동	249-1	대지	402	•공동개발 지정
		광장동	249-10	도로	14	
		광장동	244-1	대지	293	
		광장동	244-7	대지	190	
		광장동	244-21	대지	211	
		광장동	245	대지	201	
		광장동	245-13	대지	198	
		광장동	245-15	대지	199	
		광장동	248-2	대지	205	
		광장동	248-19	대지	166	
		광장동	248-38	대지	165	
		광장동	249-2	대지	159	
광장동	249-3	대지	165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지목	면적(㎡)	비고
GR-7	1,595	광장동	245-3	대지	198	
		광장동	245-4	대지	198	
		광장동	245-7	대지	198	
		광장동	245-8	대지	198	
		광장동	245-9	대지	198	
		광장동	245-10	대지	198	
		광장동	245-11	대지	205	
		광장동	245-12	대지	202	
GR-8	1,463	광장동	244-26	대지	214	•특별계획가능구역 1
		광장동	244-27	대지	199	
		광장동	244-28	대지	364	
		광장동	246-6	대지	269	
		광장동	246-12	대지	208	
		광장동	246-14	대지	209	
GR-9	3,151	광장동	239-6	주유소용지	685(664)	•특별계획가능구역 2 •필지교환가능선 : 239-6, 240-1
		광장동	244-18	주유소용지	297	
		광장동	240-1	대지	225(24)	•특별계획가능구역 3 •필지교환가능선 : 239-6, 240-1
		광장동	239-6	주유소용지	685(21)	
		광장동	240-1	대지	225(201)	
		광장동	240-7	대지	29	
		광장동	240-8	대지	326	
		광장동	240-9	대지	8	
		광장동	241-1	대지	614	
		광장동	241-8	대지	477	
		광장동	241-10	대지	213	
		광장동	242-4	대지	174	
		광장동	242-5	대지	24	
		광장동	242-6	대지	79	
GR-10	1,428	광장동	242-1	공원	1,012	
		광장동	243-8	대지	200	
		광장동	243-9	대지	113	
		광장동	243-12	대지	103	
GR-11	1,286	광장동	244-6	대지	185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공동개발 지정 : 244-23, 249-9 - 공동개발 권장 : 244-6, 244-12, 244-24, 249-7
		광장동	249-7	대지	185	
		광장동	249-9	대지	4	
		광장동	244-12	대지	207	
		광장동	244-23	대지	202	
		광장동	244-24	대지	503	

※ 전체지역에 대하여 자율적 공동개발허용
():가구 내 편입 면적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적용대상	규 모	비 고
이면부	배후주거지역	800㎡	간선부 제외

■ 대지의 분할

구 분	가구번호	지번	비 고
필지분할 가능성	GR-4	광장동 395-3	필지 형태의 정형화 및 효율성 제고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 불허용도 결정 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 상기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임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계획

■ 권장용도 결정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1층에 한하며,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 ^{주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전층 권장용도(권장용도2)는 건축면적(공용면적 제외)의 20%이상 도입시 인정

주1) 권장용도는 건축면적(공용면적 제외)의 50% 이상 도입시 인정

■ 건축물 용도완화 결정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자연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완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인 것

다.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자연경관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1)}	상한용적률 ^{주2)}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공동개발 특별지정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주3)}	400% 이하	특별계획가능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이하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공동개발 특별지정의 경우 상한용적률은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4필지,30%)과 도로(폭 2m,의무사항)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산정

주3) 준주거지역 상향시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준공공임대주택 제외), 비주거용도 비율은 오피스텔 등 준주거를 제외하고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

■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과 각 인센티브 항목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은 허용용적률 이하로 한다. 즉,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와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이하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친환경 인센티브의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량으로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량을 대체할 수 없다. 반면, 친환경 인센티브의 합이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확보한 경우에는 초과한 친환경 인센티브량으로 부족한 계획유도 인센티브량을 대체할 수 있음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량을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중 1개

-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단, 대지 현황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적용이 곤란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량을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단, 대지 현황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적용이 곤란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예 :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 공개공지, 도로변 건축선 지정 등 관련규정 상 의무적으로 확보·설치되는 사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확보·설치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 그 외 각 항목별 용적률 완화 여부 및 산정기준 등은 결정조서 및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양을 산정토록 함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인 경우 α : 0.5 • 필로티형인 경우 α : 0.4 • 침상형인 경우 α : 0.4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이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이내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0 이내	
건축물 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5 이내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건축면적) × 0.4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 0.1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3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이내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3 이내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준주거지역 상향시 주거부분의 허용용적율은 250%이하로 하되,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비주거부분) 인센티브량의 60%이상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준공공임대주택 미도입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60%는 다른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고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센티브(60%)를 제외한 나머지 허용용적률(40%)에 대하여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친환경 인센티브의 운영기준을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

-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에 한함)하는 경우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의 상한용적률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8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 제29조(공개공지)의 ⑦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함

■ 공동개발 특별지정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공동개발(특별지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공동개발 필지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2필지	10% 이하	-
3필지	20% 이하	-
4필지	30% 이하	-
5필지	40% 이하	-
6필지 이상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 이상 지역

-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분할된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함
- 광장동 246-9필지 외 3필지 상한용적률 산정(예시)
 - 필지수 4필지 : 30%
 - 공공시설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 $\text{기준용적률} \times [1.3 \times (250\%/250\%) \times (138\text{m}^2/980\text{m}^2)] = 45.8\% \approx 46.0\%$
 - 상한용적률 : $250\%(\text{기준용적률}) + 30\% + 46\% = 326\%$ (단, 권장용도 준수 및 도로 기부채납 의무)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상향시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추가)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방법

구분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준공공임대주택 제외), β : 상한용적률	

라.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높이 계획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차산로변	35m 이하	
	이면부	25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5m 이하	
	천호대로변, 소로3-1호선변, 이면부	30m 이하	권장용도2 준수시 (35m)

마.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 및 형태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천호대로변, 아차산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광장로변, 보행자우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간선도로변	아차산로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내측 2m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및 적 용 기 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보행 환경제고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부 : 3m 보도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이면부 : 1~2m 차도 및 보도로 조성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계 획 내 용	적 용 구 역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셔터 및 투시벽(1층 전면의 50% 이상) 설치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금지 (폭20m이상 도로변) 	구역 전체
건축물 색 채 및 외관	탑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 건축물 권장 •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폭25m이상 도로변
	재료/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 사용금지 	폭25m이상 도로변
	야간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설치 • 간선변 10층 이상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을 설치 	구역전체
	옥외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의 도로변 노출 금지 	폭25m이상 도로변
기타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구역전체
	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연결통로 등 지중화 관련 시설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 	구역전체
	담장 및 옹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다. 교통처리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보행자 우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산과 인근 문화체육시설을 연계하는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가로(아차산로 73길)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호대로변 • 아차산로변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광나루1 특별계획가능구역	광진구 광장동 244-28 일대	-	증) 1,463	1,463	-
신 설	광나루2 특별계획가능구역	광진구 광장동 244-18 일대	-	증) 985	985	
신 설	광나루3 특별계획가능구역	광진구 광장동 241-1 일대	-	증) 2,166	2,166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 설	광진구 광장동 244-28 일대	1,463	• 광나루역세권 중심기능 육성 및 배후주거 지원기능 확충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신 설	광진구 광장동 244-18 일대	985	
신 설	광진구 광장동 241-1 일대	2,166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 단,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 가능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774	-	15,774	100.0	-	
소 계	15,774	-	15,774	100.0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74	감) 4,252	11,522	73.0	-
	준주거지역	-	증) 4,252	4,252	27.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	광진구 광장동 244-28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252	광나루역세권의 기능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불허용도 결정 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특별계획가능구역

주) 상이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임

■ 권장용도 결정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전층 권장용도(권장용도2)는 건축면적(공용면적 제외)의 20%이상 도입시 인정

■ 용적률 결정 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1)}	상한용적률 ^{주2)}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주3)}	400% 이하	특별계획가능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이하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공동개발 특별지정의 경우 상한용적률은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4필지,30%)과 도로(폭 2m,의무사항)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산정

주3) 준주거지역 상향시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준공공임대주택 제외), 비주거용도 비율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고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 높이 계획

구 분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준주거지역	광나루1 특별계획가능구역	5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광나루23 특별계획가능구역	60m 이하	

■ 건축물 배치계획 및 형태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천호대로변, 아차산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
		보행자우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간선도로변	아차산로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내측 2m	-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광나루1 특별계획가능구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광진구 광장동 244-28 일대	
면 적		•1,463㎡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대지에 한함)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면적의 15%이상(순부담) 확보 -부족분은 공공시설(건축물 포함)로 확보 •도로 확폭 2개소 -천호대로 143길 : 폭원 6m → 8m -천호대로 145길 : 폭원 6m → 8m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 검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제공 검토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권장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50% / 허용 : 350% / 상한: 400%이하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3m, 이면도로변 2m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천호대로변	
	지하철 환기구	•건축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권장	

■ 광나루2 특별계획가능구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광진구 광장동 244-18 일대		
면 적	●985㎡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대지에 한함)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면적의 15%이상(순부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분은 공공시설(건축물 포함)로 확보 ●도로 확폭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호대로 145길(북측) : 폭원 6m → 8m -천호대로 145길(서측) : 폭원 6m → 8m ●지하철출입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 검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제공 검토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필지교환가능선	●광장동 239-6, 광장동 240-1 -필지형태의 정형화 및 효율성 제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권장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50% / 허용 : 350% / 상한 : 400%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호대로변 3m, 이면도로변 2m ●공공보행통로 2m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천호대로변
공공보행통로		●폭원 2m	
지하철출입구		●건축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권장	

■ 광나루3 특별계획가능구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광진구 광장동 241-1 일대	
면 적		•2,166㎡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대지에 한함)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면적의 15%이상(순부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분은 소공원 및 공공시설(건축물 포함)로 확보 •도로 확폭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호대로 145길 : 폭원 6m → 8m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 검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제공 검토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필지교환가능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동 239-6, 광장동 240-1 -필지형태의 정형화 및 효율성 제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권장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50% / 허용 : 350% / 상한 : 400%이하
	최대높이	•60m 이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호대로변, 아차산로변 3m, 이면도로변 2m •공공보행통로변 4m 	
	벽면한계선	•아차산로변 : 2m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천호대로변, 아차산로변	
	공공보행통로	•폭원 4m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건축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권장	

3.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 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지목	면적(㎡)	비 고
GR-8	1,463	광장동	244-26	대지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공동개발 지정 : 246-6, 246-14 - 공동개발 권장 : 244-26, 244-27, 244-28, 246-12
		광장동	244-27	대지	199	
		광장동	244-28	대지	364	
		광장동	246-6	대지	269	
		광장동	246-12	대지	208	
		광장동	246-14	대지	209	
GR-9	3,151	광장동	239-6	주유소용지	6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 권장
		광장동	244-18	주유소용지	297	
		광장동	240-1	대지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공동개발 지정 : 240-7, 240-8, 240-9, 241-10, 242-4, 242-5, 242-6 - 공동개발 권장 : 240-1, 241-1, 241-8
		광장동	240-7	대지	29	
		광장동	240-8	대지	326	
		광장동	240-9	대지	8	
		광장동	241-1	대지	614	
		광장동	241-8	대지	477	
		광장동	241-10	대지	213	
		광장동	242-4	대지	174	
		광장동	242-5	대지	24	
		광장동	242-6	대지	79	

■ 불허용도 결정 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 상기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임

■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1)}	상한용적률 ^{주2)}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특별계획가능구역1,2,3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이하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천호대로변, 소로3-1호선변, 이면부	30m 이하	권장용도2 준수시 (35m)
	아차산로변, 천호대로변, 천호대로변 전면부	40m 이하	권장용도2 준수시 (50m)

■ 건축물 배치계획 및 형태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천호대로변, 아차산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
		보행자우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간선도로변	아차산로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내측 2m	-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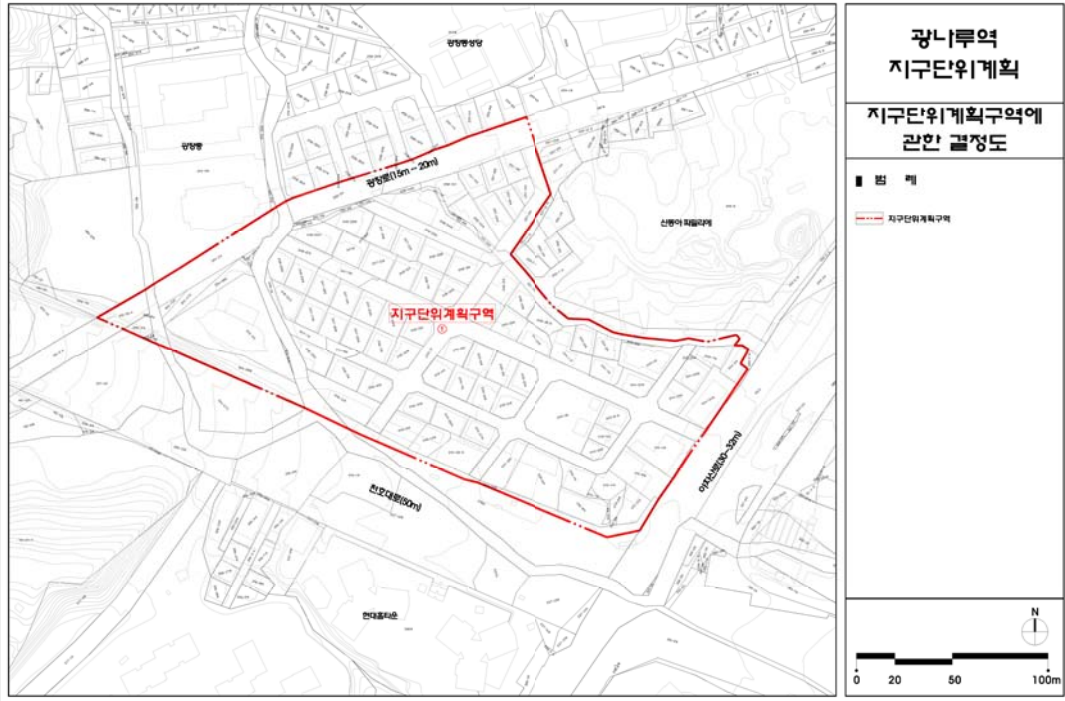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V.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편의를 위하여 광진구 도시디자인과(☎02-450-7685)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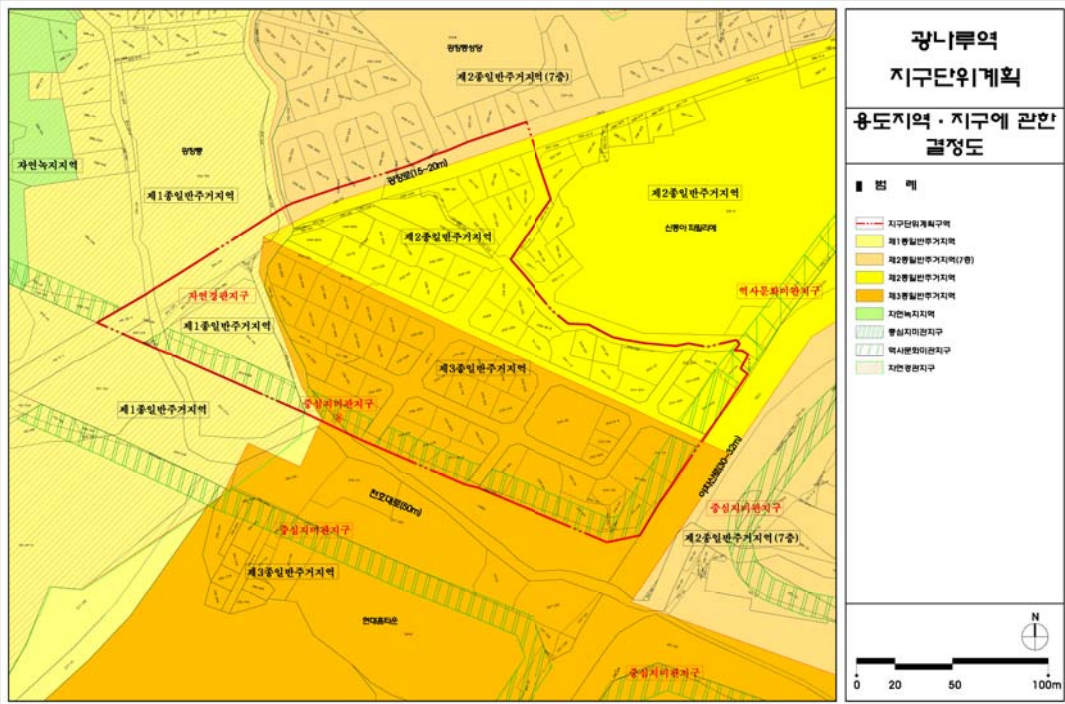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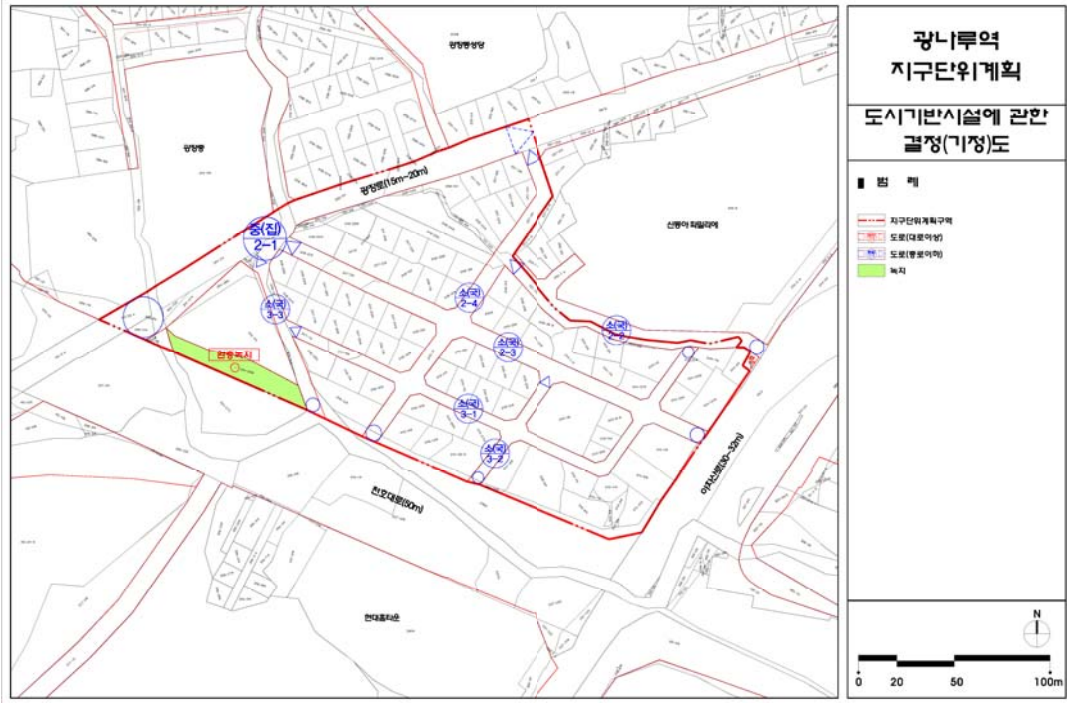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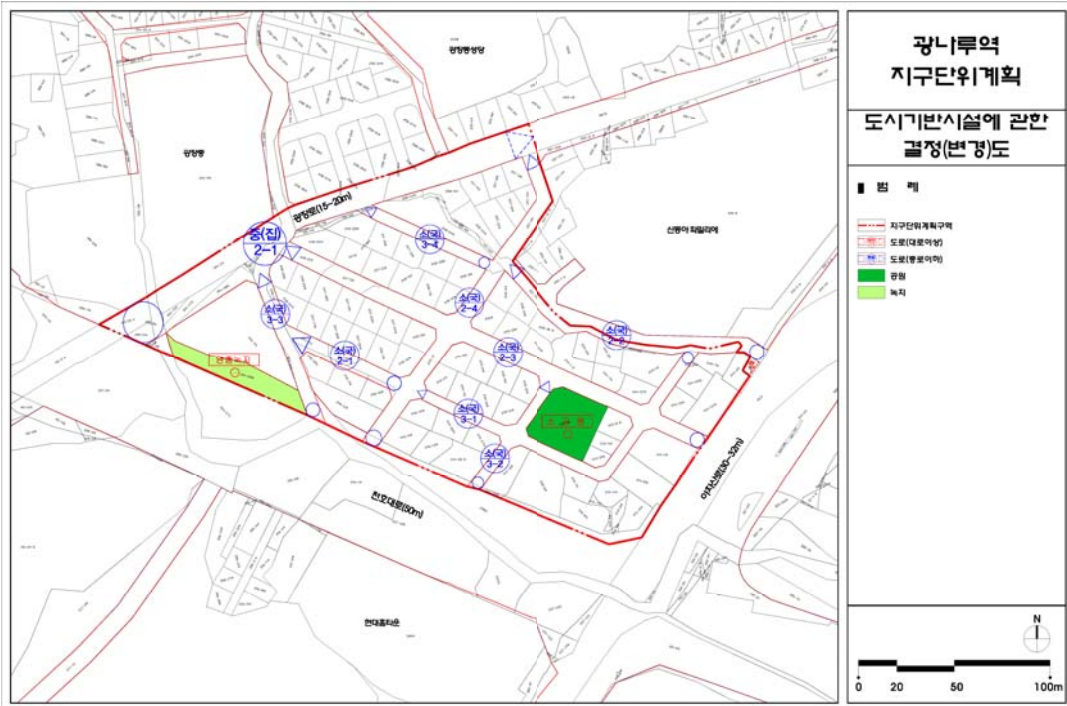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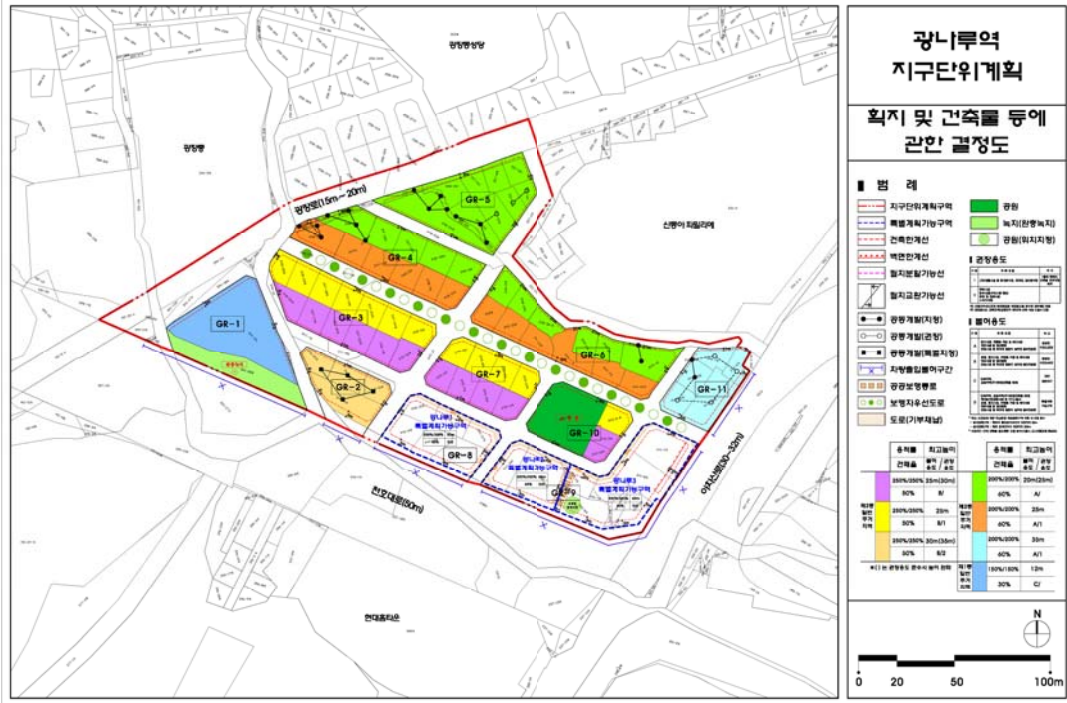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7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37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대표 윤석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5(천호동)	○ 장애인 웹툰작가 양성 교 육프로그램 사업비 마련	20 (현금)	전국	'16.4.19. ~'16.5.18.
						'16.4.19. ~'17.4.18.
2016-38	(사)한국제이티에스 (대표 최석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정토회관 2층	○ 북한 및 국내외 인도적 지 원 및 개발협력 사업	600 (현금)	전국	'16.5.1. ~'17.4.30.
						'16.7.1. ~'17.6.30.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7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39	대한적십자사 (대표 김성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 예과도르 지진피해 이재민 지원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16.4.21. ~'16.5.20.
						'16.4.21. ~'17.4.20.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85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50016	광고라이프피 에프비(주)	김병호 유형석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91, 제1층 122호(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1 차,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 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6.05.02.

-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05.05.~06.04)
-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임원, 전문인력)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92호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산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13개 업체
 -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15개 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5월 27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사업정지 60일또는 과징금 200만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435	알스팩코리아인터내셔널(주)	정영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13,***호(서초동,중앙로알오피스텔)	2015-08-28
2	605	탑스타쉬핑(주)	김성수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58,***호(명동2가,한송빌딩)	2015-06-29
3	895	(주)제이에이치종합물류	마정호	중랑구신내로***금강리빙스텔(신내동)	2015-07-14
4	1158	남아종합물류(주)	조정자	마포구삼계로** (도화동,근신빌딩)	2015-09-22
5	1333	(주)엠알아이	조성문	마포구마포대로109롯데캐슬프레지던트***동***호(공덕동)	2015-09-17
6	3449	씨투씨인터내셔널주식회사	이준영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583(염창동,우림블루나인)A동***호*실	2015-06-18
7	3649	주식회사 티지엘네트웍	임상진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진길** *층(합정동)	2015-06-01
8	3651	주식회사 노아트랜스월드	황호균	종로구사직로8길34,경희공의아침오피스텔3단지***호(내수동)	2015-07-18
9	4003	(주)케이쓰리로직스	김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36길**(연희동,연희그린빌라)에이동비**호	2015-07-09
10	4013	(주)케이더블유로지스틱스	김상욱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99,***호(신공덕동,대우메트로디오빌)	2015-07-31
11	4019	해성인터내셔널로지스틱스(주)	임동준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9길99스타밸리***호	2015-08-28
12	4193	(주)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장남일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7길**, 3층(삼성동)	2015-08-05
13	4213	(주)엘림머프글로벌	이정숙	서울특별시서초구매현로16(양재동,하이브랜드)패션관5층***-**	2015-09-28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사업정지 30일또는 과징금 200만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313	㈜메가익스프레스	이민준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길38 ****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1차)	2015-10-08
2	525	플러스종합물류(주)	권혁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내수동, 용비어천가) ***호	2015-12-27
3	1022	형설해운항공(주)	노광석	중구을지로42길** (광희동1가)	2015-11-01
4	2626	중해한국홀딩(주)	장소혜, 이소덕	중구남대문로*** (다동)	2015-11-15
5	2838	(주)유엠엘	배민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 (화곡동, 신화빌딩) *층	2015-12-06
6	3721	해동상선 주식회사	김용재	서울시 중구 무교로 ** (무교동)	2015-12-11
7	3739	해밀해운항공 주식회사	조재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호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사직동163)	2015-12-19
8	3905	주식회사 서진항운	이승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사직동 75) ***호	2015-11-30
9	3914	주식회사 에스티로지스	심동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성지하이츠3차빌딩 ***호 (역삼동)	2015-12-09
10	3951	㈜에스와이트랜스	장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비동 ****호	2015-12-21
11	4221	월오션 (주)	조중현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30 (다동) 삼덕빌딩 ***호	2015-10-07
12	4224	에스알로지스틱스(주)	김인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 (신당동, 백석빌딩) ***호	2015-10-08
13	4236	(주)티샵	이경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 (연희동, 신라빌딩)	2015-11-18
14	4240	주식회사 에프티에이글로벌	노기훈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7 (신당동, 금성빌딩) ***호	2015-11-20
15	4242	주식회사 케이엠에스로지스틱스	고경균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10, ***에이호 (도선동)	2015-11-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 (업체명)	장대석 (바위산업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35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2015년 성동·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청문실시	기관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부서	행정지원과	담당	박은경
	주소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1동 142-1)		전화	02-3146-2636	
	일시	2016년 5월 31일(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장소	행정지원과 사무실	
	주재자	직 위	행정관리팀장			
		성 명	서경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박은경(02-3146-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9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박재훈	경기도 이천시 현방로	일시 : 2015-12-11 05:39 장소 : 광장사거리 내용 : 대전99바2529(트레일러)차량 축하중 제4축 1.25톤 초과	처분일 : 2016. 1.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3. 31 독촉일 : 2016. 4. 20.
박순영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	일시 : 2015-12-16 05:29 장소 : 왕십리로 내용 : 인천98사1046(트레일러)차량 폭 0.24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1. 25.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3. 31 독촉일 : 2016. 4. 2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5. 31.
 -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1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내발산동)
 2. 점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49-10(중량물재생센터내)
 3. 점용면적 : 29.12㎡
 4. 점용목적 : 군자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진입도로 개설
 5. 점용기간 : 2016. 05. 04 ~ 2019. 05. 03(3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18호

제3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1. 시상인원 : 26명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1명)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 상	최 우수 상	우 수 상
공 모	신 축	최근 3년 이내(‘13.8.1~’16.7.31) 사용승인(신축)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1	4	20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공모	리모델링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1.7.31.까지)로 최근 3년 이내(`13.8.1~`16.7.31)에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1	4	20
	녹색건축물	최근 3년 이내(`13.8.1~`16.7.31)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필수사항 : 녹색건축인증(인증기관 및 등급 표기)			
건축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1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16. 8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명시)
4.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 부각 및 대 시민 홍보
 - 건축 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시 경감자료로 활용(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용역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6. 10월 중
 - 작품전시 : 2016. 10월 중
 - ※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 ① 신 축 : 최근 3년 이내 ('13.8.1.~'16.7.31.)까지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 ② 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01.7.31.까지)로 최근 3년 이내 ('12.8.1.~'15.7.31.)까지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③ 녹색건축 : 최근 3년 이내('13.8.1~'16.7.31.) 사용승인(신축, 리모델링 포함)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녹색건축물
※ 필수사항 : 녹색건축인증(인증기관 및 등급표기)

7. 작품공모신청

- 접수기간 : 2016. 5. 12(목) ~ 8.1.(월)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수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 (우)100-744 「서울시 건축상」 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및 건축물대장 포함), 작품설명서 1부, 동의서 1부.
 - ▶ 작품자료 1부 - A3 사이즈의 출력물 (10매 이내)
 - ▶ 작품CD 1부 - 신청서, 동의서,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 ※ 구체적인 기준은 '참고자료' 응모작품 제출기준' 참고

8. 기타사항

- 기존의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1개의 작품을 각 부문에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음
-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는 가능)
- 수상자는 대표설계자 1인으로 한정함
-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수상예정작 25작품 및 상위10작품 선정), 2차 심사(상위10작품 중 최상위 5작품 선정), 3차 현장심사(최상위 5작품 중 대상 1작품 선정)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특별상'을 시상예정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수상예정자의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후 18:00 ~ 22: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 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담당 : 조미리, 화 : 2133-7106)로 문의

참고자료

응모작품 제출기준

1.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saf.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1부, 설계설명서 1부, 동의서 1부 및 작품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작품자료는 표지, 개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품사진(5컷 이상)을 A3 사이즈 10매 내로 출력(좌절제본) 하여 제출
(녹색건축 부문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녹색건축과 관련한 계획개념, 노력요소 등을 표현하여 함께 편철)
3. 작품설명서 및 작품자료 등에는 설계자 인적사항 기재 불가
[작품자료 표지는 흰색바탕에 작품명(검정색, 50포인트, 굴림체 굵게)만 중앙에 표기]
4. 제1항과 제2항의 내용 파일을 CD에 담아서 제출
(작품자료 파일형식은 JPG 또는 PDF파일, 해상도는 300dpi로 제출)
5. 작품설명서에는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등에 대한 소개를 기재
(녹색건축 부문의 경우 녹색건축과 관련한 작가의 의도 등을 구체화 하여 표현)
6. 수상예정자의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7.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후 18:00~22: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 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서식 2

작 품 설 명 서

(작품명: , 응모분야:)

- ▶ 건축개요, 작품배경, 계획개념, 작가의 변, 녹색건축 설계개념(녹색부분에 한함) 등
- ※ 1매(부족한 경우 별지 1매 추가)로 기술,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양식변경 불가

서식 3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응모자(저작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연 락 처 :

저 작 물

- 공모명 : 제34회 서울시 건축상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 저작물 : 설계 설명서, 작품자료(사진, 도면 등)

상기 저작권자 본인은 「제34회 서울시 건축상」 과 관련 작품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서울특별시) 및 건축 도시공간연구소가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금빛자갈	김기열	2016.04.04.	서울160015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5호 (양재동, 성문빌딩)	300,000	신규등록
2	㈜내경이앤씨	최진우	2016.04.11.	서울160016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 204호 (목동, 신한이모르젠)	310,000	신규등록
3	㈜엘에이치엔	홍영숙	2016.04.11.	서울160017	서초구 강남대로 305, 205호 (서초동, 현대렉시온)	300,000	신규등록
4	㈜시티에비뉴	서준영	2016.04.12.	서울160018	강남구 논현로 520, 4층 (역삼동, 청송빌딩)	500,000	신규등록
5	㈜케이비하나스테이제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종오	2016.04.15.	서울160019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층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9,920,000	신규등록
6	㈜마스던제10호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조수호	2016.04.21.	서울160020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마스던투 자운용내)	50,000,000	신규등록
7	웨스트우드피에프비이㈜	김진	2016.04.22.	서울160021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여의도동)	6,500,000	신규등록
8	효원산업개발	김혜신 임종하	2016.04.27	서울160022	강남구 선릉로107길 7, 301호 (역삼동, 대명빌딩)	300,000	신규등록
9	㈜이레건설	이형석	2016.04.01.	서울140049	강남구 삼성로96길 6, 1410호 (삼성동, 엘지트윈텔1차)	사업완료	폐업
10	에이엠플러스스피에프비이 대림(주)	안재석	2016.04.07	서울100073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사업완료	폐업
11	㈜용민	이창연	2016.04.12.	서울150035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 806호 (수서동, 사이룩스오피스텔)	사업중지	폐업
12	삼성중공업㈜	박대영	2016.04.11.	서울080424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서초동)	1,154,951,155	전출 (경기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36호

제3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강한 서울 짓기’, 사람을 생각하는 서울형 녹색건축이란 비전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의 현안에 대한 참여의 장(場)을 마련하고 우리 시 건축정책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장래 건축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1. 주 제 : 녹색 공간환경 플랫폼
- 2. 응모기간 : 2016. 5. 12(목) ~ 6.30(목)
- 3.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
- 4. 선정인원 : 30명
- 5. 응모방법
 - 1차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 형식의 글과 스케치로 표현하여 제출
 - 2차 :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2일간)을 통해 팀별 작업 후 결과물 제출

<대학생 건축 워크숍(안)>

- ▶ 일시 : `16. 7. 29(금) ~ 7. 30(토)
-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 ▶ 참가대상 : 1차 심사 통과자(30명)
- ▶ 진행방법 : 1차 통과자로 팀을 구성하고 각 팀 튜터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패넬, 모형, 디지털 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
- ※ 워크숍 오리엔테이션(O.T) 일정 : 7.8(금) 예정

6. 1차심사 결과 발표 : 2016.7.5.(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saf.kr>) 게시

7. 시상 및 작품전시

- 시상내용 : 최우수 1팀, 우수 4팀 : 제34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 부문) 상장 수여
- 시상일 : 2016. 10. 6.(목)예정
- 작품전시 : 2016. 10월중
- ※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참가신청

- 응모기간 : 2016. 5. 12(월) ~ 6.30(목)
- 응모방법

- 웹사이트 or 모바일 앱 : ‘내 손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 이메일 : office@saf.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에세이 및 스케치 A4 2매 이내
 - ※ 양식은 ‘내 손안에 서울’ 웹사이트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또는 서울건축문화제 웹사이트(<http://saf.kr>)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 파일형식은 HWP, JPG 또는 PDF파일, 해상도는 가능하면 300dpi로 제출

8.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심사에 통과하였으나 워크숍에 불참할 경우 별도로 선정된 예비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워크숍 불참자는 수상자에서 제외됨
-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 조미리, ☎ 2133-7106)로 문의

참고자료

제34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발제문

주제 : 녹색 공간환경 플랫폼

-도시와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아이디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외형적 발달과 사업성만을 염두에 둔 많은 건축물은 지역맥락, 지역문화 등 지역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아닌 물질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획일화되고 확산되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있는 도시는 도시열섬현상으로 도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녹색 공간환경 플랫폼이다. 본 공모전의 목적은 도시의 숨겨진 공간들을 활용하여 도시와 건축물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동시에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모전의 대상지는 건축물의 건물외벽·옥상 및 지붕, 대지 내 자투리 연결 공간, 쌈지 공간, 공개공지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식 1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서

소 속	대학(교)	학부.학과	학년(재학, 휴학, 대학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경로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홈페이지,SNS)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지인권유 <input type="checkbox"/> 기관소개		
신청동기	(글씨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참가신청 주의사항	1. 본 신청양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에세이 및 스케치는 A4 용지 2매 이내(양면 불가)로 서식 제한이 없으나, 세로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측 상단에 성명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안내>

1. 수집·이용목적 : 참가자 인적정보 확인,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운영관련 이용(공지사항 안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운영기간 동안 보유, 이후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동의 시,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제34회 서울시 건축상(대학생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인)

첨부 : 주제에 대한 에세이 및 스케치(A4 용지 각 1매)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응모자(저작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연 락 처 :

저 작 물

- 공모명 : 제3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대학생 부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저작물 : 에세이, 스케치 및 워크숍 결과물

상기 저작권자 본인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과 관련 작품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 제출자료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서울특별시)이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16-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16호(2016.03.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중랑구공고 제2016-338호(2016.04.14.)로 열람공고한 신내동 312-1 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본 고시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2692~5, 전송 2094-2689)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2-1 번지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칭 : 신내동 312-1 번지일대 공공공지 조성사업
- 다. 사업의규모 : 면적 135㎡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앙구청장
 사업명 : 신내동 312-1 번지주변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신내동	312-1	답	1518	131	윤선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306동 1102호(상계동, 상계3차 현대아파트)	성병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35번길 21, 1304동 1802호(동천동,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3단지)	근저당권	
						윤선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306동 1102호(상계동, 상계3차 현대아파트)	윤길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26-1(성수동1가)	근저당권	
						윤선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306동 1102호(상계동, 상계3차 현대아파트)	백문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정3로 68, 102동 701호(신방동, 신방한성필하우스)	근저당권	
2	신내동	326-4	주차 장	187	4	박천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9길 45(신내동)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 1가)		근저당권부 채권·윤길중 지분 압류

I. 위치도



II. 현황 사진



◆ 서대문구고시 제2016-58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 (2015.03.1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6-282호 (2016.4.7.)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12일
서대문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사업시행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326호 등 2필지
- 다. 사업의 규모(면적) : 1,279㎡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7.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 따로붙임
-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련근린공원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실토지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관리명세	
1	흥은2동 산11-326	임야	750	750	임야	이우영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267	법무부 (국가승무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기압류	
2	흥은2동 310	전	529	529	전	이명환	730 ANSKAR COURT, COQUITLAM BC V3J7V2 CANADA	조성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19	위임대리인	

◆ 마포구고시 제2016-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 마포구 성산동 271-20외 2필지 지상 (주)남정앤엔제이의 2인이 시행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48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과(☎3153-9413)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12일
마 포 구 청 장

- 가. 사업명 : 성산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나. (공동)사업주체 : (주) 남정앤엔제이의 2인
 - 김기성{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0길 16(성산동)}
 - (주)남정앤엔제이 대표이사 김충현{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 302호}
 - (주)세아씨앤씨 대표이사 김순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9, 201호}
-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1-20 외 2필지(271-22, 40)
- 라. 대지면적 : 891.2㎡
- 마.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162.654㎡ /
공동주택(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48세대)
- 바. 사업시행기간 : 2015. 07. 20. ~ 2016. 05. 30.
- 사. 사업계획승인일 : 2015. 07. 07(변경승인일 : 2016. 05. 03)
- 아. 변경승인 내용 : 사업주체 변경((주)남정앤엔제이의 3인 →(주)남정앤엔제이의 2인)
- 자.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 차. 관련도면 :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문의: ☎02-3153-9413)

◆ 송파구고시 제2016-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서울시 송파구고시 제2016-53호(2015.06.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도시계획(시장 : 잠실롯데 종합관광 유통시설 공사) 사업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명 칭 : 잠실롯데 종합관광 유통시설 공사
-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연면적	583,679.12	583,679.12	변경없음
시장연면적	340,115.81	340,115.81	월빙동(W/B) 4층 : 용도(표시)변경 운동시설(계단,복도,ELEV) 852.46M ² 중 판매시설(계단,복도,ELEV) 490.39M ² 및 판매시설(점포) 362.07M ² 로 용도변경. 운동시설(체력단련장) 641.79M ² 중 판매시설(미용실) 330.72M ² 및 판매시설(점포) 311.07M ² 로 용도변경. 판매시설(의원) 125.60M ² 을 판매시설(점포)로 표시변경. 운동시설(기계실) 84.99M ² 을 판매시설(기계실)로 용도변경.
비도시계획시설	243,563.31	243,563.31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호텔롯데	송용덕	서울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박동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잠실동)
롯데쇼핑(주)	이원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1(소공동)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27) 및 도시계획과(☎02-2147-299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6-37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대3-13) ~ 선린상고 동측, 이태원동 311 ~ 이태원동 153-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 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용 산 구 청 장

-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5)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결정조서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175	청파3가 (대3-13)	선린상고 동측	일반 도로	1952. 3. 23.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19	청파3가 91-1	청파3가 12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340	이태원동 311	이태원동 153-1	일반 도로	1963. 9. 19.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258	이태원동 293-14	이태원동 154-24	일반 도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	소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종점 변경 • 연장 175m → 1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구역 결과 재정적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소로2	소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변경, 종점 주소변경 • 연장 340m → 25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구역 결과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군부대 저촉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장 축소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량구공고 제2016-4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화동 305-56~305-42」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량구청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 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중 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량구 중화동 305-56~305-4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폭 5m, 연장 62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량구청장[서울시 중량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전화 : 2094-2181~3)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과(전화 : 2094 - 2692~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305-56	도로	769.6	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2	중화동	305-45	대	344.8	73.8	지명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31, 104동 2201호(월계동, 그림비아파트)	남흥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2, 10동 801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기입류	
								주식회사 엘지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전세권	
3	중화동	305-44	대	211.6	66.6	유정수(1/2) 김조순(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창계7가 지점]		근저당권	
4	중화동	305-43	대	198.0	46.2	최항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534번길 18	-				
5	중화동	305-42	대	555.0	147.1	주식회사 중앙에너지버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55	한국맥도날드유 한회사	서울시 종로1, 13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전세권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앙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중화동	305-45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지명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31, 104동 2201호(월계동, 그랑빌아파트)	남홍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2, 10동 801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가압류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4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5층)	연와조	57.5							
			건물(옥탑)		22.7							
2	중화동	305-44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유정수(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건물(지하출입구)	철근콘크리트조	3.7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옥탑)		5.4							
			김조순(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종화동	305-4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주식회사 중앙에너지비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55	한국매도빌드 유한회사	서울시 종로1, 13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전세권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I. 위치도



II. 현황 사진



◆ 은평구공고 제2016-5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 공고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과,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3. 관련 내용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 수령시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봉산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0-9번지 일대
- 2)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산131-8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12,743㎡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열람장소: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40,802	12,743						
구산동 산136-5	임	33,159	5,1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465-12 유진연립에이동103호	차봉*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0	황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한충*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심형*				
				서울 구산동 308-98	변수*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김정*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박봉*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성*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 9,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영*				
갈현동 산131-22	임	190	19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갈현동 산131-8	임	7,453	7,4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물건조서 : 해당없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으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대표 이종열)	서울특별시 은행구 동일로684, 1층 (북변동 20동)	서래섬 상류 (한강상)	직접점용 (1,278.4㎡) 간접점용 (617.4㎡)	도선장 개·보수위한 하천점용	'16.5.1 ~ '16.6.30 (61일간)	'16.5.4

< 도선장 위치도 >



도선장 위치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저스포츠 (대표 김진원)	인천시 서구 가좌동 ***	양 화 : 성산대교~당산철교	양 화(62㎡) -동력선 1척 -무동력 13대	수상레저사업	2016.5.5. ~ 2016.10.31	2016. 5.4.

사업소공고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6-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동대문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동대문2016-1호 (2016.5.3.)	해민소방(주) (264-81-22005)	김상필 (59.12.9)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2(답십리동)	02-3482-7930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7-12~중랑구 상봉동 474-6번지
 - 면 적 : 929.9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기공급을 위한 송전선 전력구 설치
 - 내 역 : 전력구 터널(2.3m×3.05m), L=223m
5. 점용기간 : 2016.01.29.~2021.01.28.(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노원구 상계동 813번지
 - 면 적 : 242㎡(도봉구:130㎡, 노원구:1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중송전 전력케이블 매설

- 내역 : 전력케이블 L=145m
 - 송전 4회선 : D175mm×13공
 - 통신 3조 : D100mm×3공
- 5. 점용기간 : 2015.10.05.~2020.10.04.(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0 사서함 170 제2051부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1(동작대교 남단)
 - 면적 : 3.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친환경 진지 설치
 - 내역 : 벤치 2개(0.5m×1.8m×0.5m, 0.8m×1.8m×0.8m)
5. 점용기간 : 2016.05.20.~2021.05.19.(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1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상암동)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초구 반포동 일원

- 면 적 : 영구 30,664㎡, 일시 820㎡
-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열배관 매설 1식
 - 맨홀 1개소, 배관상태 점검 TP판넬 1개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218, 토정동136-1번지 일원)
- 5. 공사기간 : <당초>2016.03.18.~2016.04.30.
<변경>2016.03.18.~2016.05.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